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07
----------	------

2016년 9월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자 : 2016년 8월 12일
- 다. 회부일자 : 2016년 8월 16일
- 라. 상정결과 : 제27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년 9월 6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문화본부장 고흥석)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에 따른 조문 정비와 상위법령 개정사항, 기타 문화재 보존·관리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지정문화재의 도난방지장치 및 금연구역 관련 규정 신설함
(안 제7조)

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한 상위법 내용 반영함(안 제19조, 안 제25조)

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시행령 개정 반영함(안 제45조, 안 제4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의 조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남중)

-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서 2015. 3. 2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분법화 되어 제정되어 1년 후인 2016. 3.28.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에서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와 관련하여 별도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현행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면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 동 전부개정조례안의 대부분은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시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한 것임(721)개 조 중 22개 조가 이에 해당함).

1) 현행 조례의 조문 번호는 제 74조까지 있으나 2개 조(제37조 및 제38조)는 2014. 3. 20 삭제된 바 있음.

- 이 밖에 상위법 체계에 따른 조례 정비,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 인용 조항의 오기 정정, 지정문화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시장의 행정조치 신설, 시 법무담당관의 자치법규 정비의견 등을 반영하여 개정되었음.
- 결론적으로,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무형문화재 관련 별도 조례 제정을 위한 정비, 상위법 개정사항 등 반영, 오기 정정, 시 법무담당관의 조례정비 의견 등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쟁점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시 법무담당관의 정비의견은 현행 조례 제28조제6항과 제30조의 손실보상 및 제64조 및 제68조의 준용규정과 관련됨.
 - 먼저 손실보상의 경우, 재산권 보장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사항인데, 법 제74조에서는 같은 법 제46조의 손실 보상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고 있고, 다른 법령의 위임이 없으므로 손실보상과 관련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고 하여 동 조례안에서는 삭제된 것임.
 - 또한 현행 조례 제64조와 제68조를 삭제한 것은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위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할 수 없고 규정하지 않더라도 상위법령을 따라야 한다는 법무담당관의 의견이 반영된 것임.

현 행	전 부 개 정 조 례 안
<u>제28조(정기조사)</u> ⑥ 제4항에 따른 조사행위 때문에 손실을 받은 자에게는 시가 그 손실을 보상한다.	<삭제>

<p>제30조(손실의 보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에 따른 문화재 기초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2. 제26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받은 자 3.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p><삭제></p>
<p>제64조(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등록취소 등)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등록취소 등에 대하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준용한다.</p>	<p><삭제></p>
<p>제68조(준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p>	<p><삭제></p>

- 이 밖에 현행 조례 제41조(시 소유 문화재의 운영위탁) 제2항과 별표2를 삭제한 것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도 민간위탁의 사무내용을 구체적 개별시설로 명시하지 않고 “문화 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로 기능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현행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별표2에 위임·위탁할 수 있는 시 소유 문화재를 지정 열거하고 있어, 위임·위탁의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므로 입법지체와 행정비효율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는 타당한 수정으로 사료됨.

현행	전부 개정 조례안
<p>제41조(시 소유 문화재의 운영위탁) ① (생략) 1.~2.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할 수 있</p>	<p><삭제></p>

는 시 소유 문화재는 별표 2와 같다.

(별표2)

**시 소유 문화재 및 문화재 관련시설의
명칭과 위치(제41조 관련)**

구분	명칭	위치
문화재	운현궁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 114-10
	경희궁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1 일원
	남산골한옥마을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2가 84-1 일원
	몽촌토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 일원

<삭제>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4조제1항제4호라목의 삭제로 동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다목을 반영하여 안 제45조와 안 제46조 그리고 안 별지 제5호 서식이 개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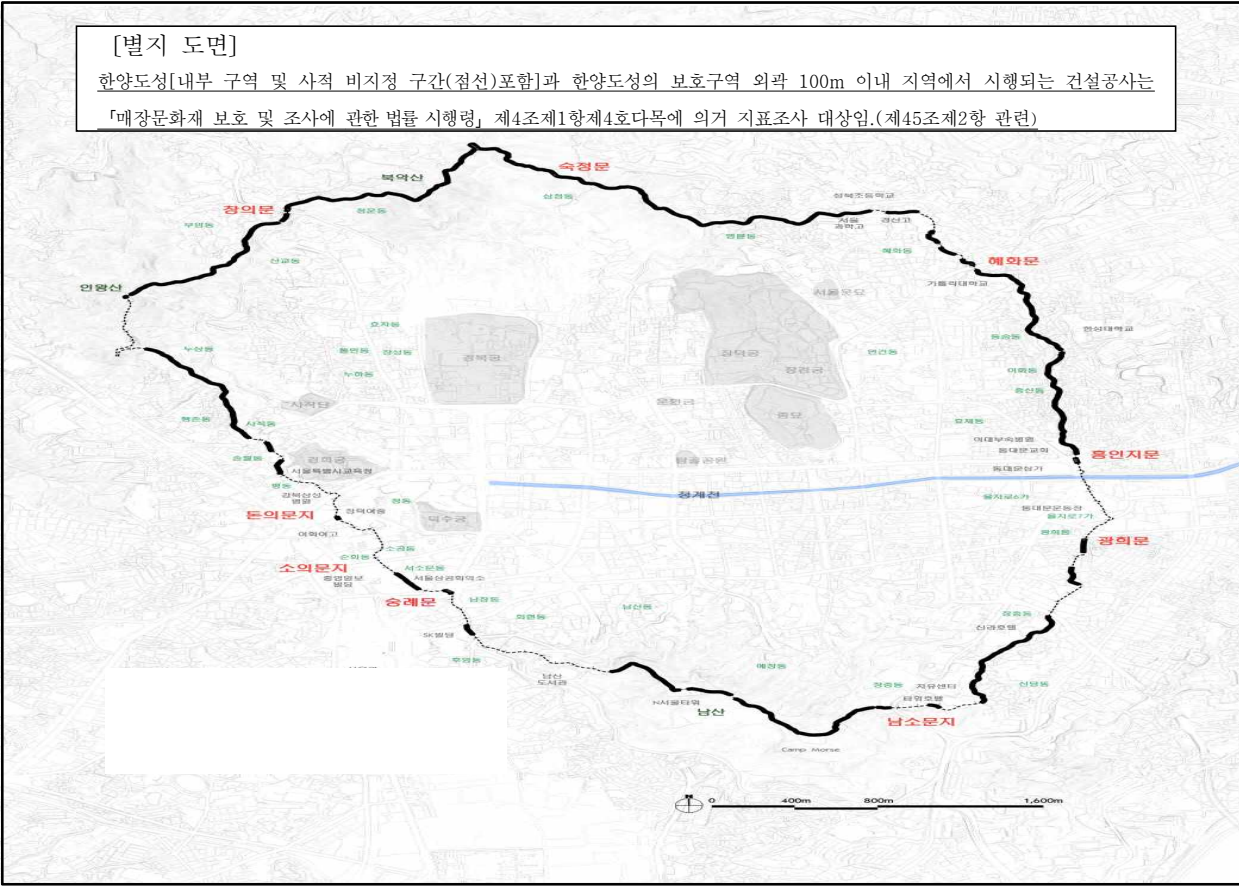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삭제된 제4조제1항제4호라목: 서울특별시의 퇴계로·다산로·왕산로·율곡로·사직로·의주로 및 그 주변지역으로서 별지 제5호 서식이 정하는 서울성곽 내부 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 제4조제1항제4호다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현행	전부개정조례안	비고
<u>제50조</u>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지는	<u>제45조</u>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① (현행과 같음)	2015.8.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p> <p>②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제4호라목의 건설공사라 함은 「서울특별시의 퇴계로·다산로·왕산로·율곡로·사직로」의 주로 및 그 주변지역으로서 별지 제5호서식이 정하는 서울성곽 내부 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p>	<p>② ----- ----- 제4조제1항 제4호다목의 ----- - 별지 제5호서식이 정하는 한양도성(내부 구역 및 사적 비지정 구간 포함)과 한양도성의 보호구역 외곽 100m 이내 지역에서 ----- ----- .</p>	
--	---	--

[안 별지 제5호서식]



○ 참고로, 개별 조문별 개정된 내용 및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음.

현 행	전 부 개 정 조 례 안	개 정 이 유
<p>제4조(문화재 보호 단체의 지원 및 육성) 시장은 문화재의 보호, 보존, 보급 및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p>	<p>제4조(문화재 보호 단체의 지원 및 육성) (현행과 같음)----- ----- ----- <u>인정할 경우</u> ----- -----.</p>	<p>표현 수정</p>
<p>제7조(<u>화재 및 재난방지</u>) ① ~ ③ (생략)</p> <p>④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 등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u>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u>」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u>하며, 지정문화재 등의</u> 도난방지를 위하여 <u>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u>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u><신설></u></p>	<p>제7조(<u>화재 및 재난방지 등</u>)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u>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u>」에서 ----- ----- <u>하며,</u> ----- ----- -- <u>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u> -- ----- -----.</p> <p><u>1.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지정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정문화재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u></p> <p><u>2. 도난방지장치는 모니터링, 호환성 및 유지·관리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것</u></p> <p><u>3. 도난방지장치의 설치 장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감시가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도록 설치할 것</u></p> <p><u>4. 도난방지장치 관리자는 도난방지장치가 잘 작동되도록 관</u></p>	<p>법 제14조와의 정합성 유지</p> <p>인용법명 개정사항 반영(2016.1.21. 명칭 개정,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p> <p>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 규정 인용</p>

현행	전부 개정 조 례 안	개정 이유
<p><신설></p>	<p><u>리할 것</u></p> <p><u>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u></p> <p><u>1.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u></p> <p><u>2.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u></p> <p><u>3. 지정문화재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u></p> <p><u>4. 기념물중 나무, 풀 또는 꽃 등이 있는 지역</u></p>	<p>법 제14조제5항 인용</p>
<p><신설></p>	<p><u>⑥ 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u></p>	<p>법 제14조제6항 인용</p>
<p><신설></p>	<p><u>⑦ 누구든지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법 제14조제7항 인용</p>
<p><u>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u></p>	<p><u>⑧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u></p> <p><u>1. 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u></p> <p><u>2. 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u></p>	<p>법 제14조제8항 인용</p>

현행	전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
<p>제8조(지정문화재) ① 시장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를 <u>제42조에</u> 따른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u>무형문화재 :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무형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u></p> <p>3. (생략)</p> <p>4. (생략)</p> <p><u>② ~ ④ (생략)</u></p>	<p><u>시설 설치</u></p> <p>제8조(지정문화재) ① ----- ----- ----- <u>제37조에</u> ----- ----- ----- -----</p> <p>1.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p> <p>무형문화재 관련사항 삭제</p> <p>무형문화재 관련사항 삭제</p>
<p>제11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 시장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u>지정하거나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면</u> 그 취지를 서울특별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u>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알려야 한다.</u></p> <p>② (생략)</p>	<p>제11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 ----- ----- ----- ----- <u>지정하면</u> ----- ----- ----- <u>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무형문화재 관련사항 삭제</p> <p>무형문화재 관련사항 삭제</p>
<p>제12조(지정서 등의 교부) ① (생략)</p> <p>② (생략)</p>	<p>제12조(지정서 등의 교부)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항 번호 ① 삭제</p> <p>무형문화재 관련사항 삭제</p>

현행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p>제13조(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 발생 시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또는 인정은 그 문화재의 <u>소유자, 보유자, 명예보유자, 점유자</u>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u>지정 또는 인정의 통지를</u>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시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p>	<p>제13조 (<u>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u>) -- ----- ----- <u>지정은</u> ----- ----- <u>소유자, 점유자</u> ----- ----- ----- <u>지정 통지를</u> ----- ----- ----- ----- -----.</p>	<p>무형문화재 관련사항 삭제 및 이에 따른 조 제목 수정</p>
<p>제14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① (생략) ② (생략) 1~6.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u>제4항까지의</u> 경우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⑥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소유자가 <u>제5항과</u> 제11조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⑦ (생략)</p>	<p>제14조(지정 해제)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③ ----- <u>제2항까지의</u> ----- ----- -----. ④ ----- ----- <u>제3항과</u> ----- ----- ----- ----- -----. <삭제></p>	<p>무형문화재 관련사항 삭제 및 이에 따른 조 제목, 항 번호, 인용 항 수정</p>
<p>제15조(가지정)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u>문화재(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u>가 지정 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지정문화재로 가지정할 수 있다. ②~③ (생략)</p>	<p>제15조(가지정) ① ----- ----- ----- <u>문화재가</u>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p>	<p>무형문화재 관련사항 삭제</p>

현행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p>④ 제1항에 관하여는 제11조와 <u>제12조제1항</u>을 준용하되,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시보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p>	<p>④ ----- <u>제12조를</u> ----- ----- -----.</p>	<p>인용조항 수정</p>
<p>제19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생략)</p> <p>1. 국가지정문화재는 <u>보호구역 경계로부터</u> 100미터 이내로 한다.</p> <p>2. 지정문화재 등은 <u>보호구역 경계로부터</u> 5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지정문화재 등 중 시장이 지정한 동산문화재, 일반묘역, 일반묘역 안의 신도비와 보호구역지정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지정문화재 등은 제외한다.</p> <p>② ~ ③(생략)</p> <p>1.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높이가 <u>별표 1의</u>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p> <p>2. ~ 9.(생략)</p> <p>④ (생략)</p> <p>1. <u>별표 1의</u>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p> <p>2. <u>제2항제2호부터</u>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토 결과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p> <p>3. (생략)</p> <p>⑤ (생략)</p>	<p>제19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p> <p>1. ----- <u>해당 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u> -----.</p> <p>2. ----- <u>해당 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u> -----.</p> <p>② ~ ③(현행과 같음)</p> <p>1. ----- <u>별표 2의</u> ----- -----</p> <p>2. ~ 9.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1. <u>별표 2의</u> ----- -----</p> <p>2. <u>제3항제2호부터</u>----- ----- -----</p> <p>3.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명확한 해석을 위해 법 제13조 반영</p> <p>안 제7조에서 별표 1 신설에 따른 수정</p> <p>위와 같음</p> <p>인용 조항의 오기로 정정</p>

현 행	전 부 개 정 조 례 안	개정 이유
<p>제24조(신고사항) 지정문화재 등 (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u>소유자, 보유자, 관리자</u>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經緯)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규(新舊) 소유자가 각각 연서(連署)로 하여야 한다.</p> <p>1.~2. (생략)</p> <p>3. <u>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의</u>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p> <p>4. ~ 8. (생략)</p> <p>9. <u>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등을</u> 시 관할 행정구역 밖으로 반출하거나 다시 반입한 경우</p>	<p>제24조(신고사항) ----- ----- -----<u>소유자,</u> <u>관리자</u> ----- ----- ----- ----- ----- ----- ----- ----- ----- ----- -----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소유자 또는 관리자의</u> ----- ----- -----</p> <p>4. ~ 8. (현행과 같음)</p> <p>9. <u>지정문화재등을</u> ----- ----- ----- -----</p>	<p>무형문화재 관련사항 삭제</p> <p>무형문화재 관련사항 삭제</p> <p>무형문화재 관련사항 삭제</p>
<p><u>제25조(생략)</u></p>	<p><u><삭제></u></p>	<p>무형문화재 관련 조문 삭제</p>
<p><u>제26조(행정명령)</u> ① 시장은 지정문화재 등(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u>인정하면</u> 다음 사항을 명할 수 있다.</p> <p>1. 지정문화재 등의 관리 사항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u>소유자,</u></p>	<p><u>제25조(행정명령 및 조치)</u> ① ----- ----- ----- ----- -----<u>인정할 경우에</u> ----- ----- ----- ----- ----- ----- ----- ----- ----- ----- ----- -----</p> <p>1. ----- ----- ----- ----- -----<u>소유자,</u></p>	<p>조 제목 수정</p> <p>표현 수정</p> <p>무형문화재 관련사항</p>

현행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p><u>보유자, 관리자</u>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p> <p>2. ~ 4. (생략)</p> <p><신설></p> <p>② (생략)</p>	<p><u>관리자</u> -----</p> <p>-----</p> <p>2. ~ 4. (현행과 같음)</p> <p><u>5. 제20조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조치</u></p> <p>② (현행과 같음)</p>	<p>항 삭제</p> <p>시장의 조치관련 세부내용 규정</p>
<p><u>제27조</u>(기록의 작성·보존) ① ~② (생략)</p>	<p><u>제26조</u>(기록의 작성·보존) ① ~ ② (현행과 같음)</p>	
<p><u>제28조</u>(정기조사) ① 시장은 지정 문화재 등의 <u>현상, 관리, 수리, 전승(傳承)의 실태,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u>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재의 <u>소유자, 보유자, 관리자</u>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p> <p>④ ~ ⑤ (생략)</p> <p><u>⑥ 제4항에 따른 조사행위 때 문에 손실을 받은 자에게는 시가 그 손실을 보상한다.</u></p> <p>⑦ (생략)</p> <p>⑧ (생략)</p> <p>1. ~ 2. (생략)</p> <p><u>3. 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의 인정과 그 해제</u></p> <p>4. (생략)</p> <p>5. (생략)</p> <p>6. (생략)</p>	<p><u>제27조</u>(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 ----- <u>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u> -----</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u>소유자, 관리자</u> -----</p> <p>-----</p> <p>-----.</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삭제></p> <p>⑥ (현행과 같음)</p> <p>⑦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삭제></p> <p>3.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5. (현행과 같음)</p>	<p>무형문화재 관련사항 삭제</p> <p>무형문화재 관련사항 삭제</p> <p>법무담당관 자치법규 정비의견 반영</p> <p>무형문화재 관련사항 삭제</p>

현행	전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
<p><u>제29조</u>(직권에 의한 조사)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및 조사상 필요한 행위범위, 조사 증표 휴대 및 제시, 조사행위로 인한 손실 보상 등에 관하여는 <u>제28조제3항부터</u> 제6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p>	<p><u>제28조</u>(직권에 의한 조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u>제27조제3항부터</u> ----- ----- -----.</p>	<p>무형문화재 관련 조문 삭제로 인용 조문 수정</p>
<p><u>제30조(손실의 보상)</u> (생략)</p>	<p><삭제></p>	<p>법무담당관 자치법규 정비의견 반영</p>
<p><u>제31조</u>(보조금) ① (생략)</p> <p>1. (생략)</p> <p>2. <u>제26조제1항</u> 각 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p> <p>3. (생략)</p> <p>4. <u>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u></p> <p>5. <u>제27조에</u> 따른 기록의 작성·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p> <p>② (생략)</p>	<p><u>제29조</u>(보조금)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제25조제1항</u> ----- -----</p> <p>3. (현행과 같음)</p> <p><삭제></p> <p>4. <u>제26조에</u> ----- -----</p> <p>② (현행과 같음)</p>	<p>무형문화재 관련 조문 삭제로 인용 조문 수정</p> <p>무형문화재 관련 호 삭제</p> <p>무형문화재 관련 조문 삭제로 인용 조문 수정</p>
<p><u>제32조</u>(경비 부담) (생략)</p>	<p><u>제30조</u>(경비 부담) (현행과 같음)</p>	
<p><u>제33조</u>(준용) 지정문화재의 관리와 보호에 관하여는 제20조, <u>제26조제1항제1호</u> 및 제3호, 제2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6호부터 <u>제8호까지</u> 및 <u>제30조</u>를 준용한다.</p>	<p><u>제31조</u>(준용) ----- ----- --- <u>제25조제1항제1호</u> ----- ----- ----- <u>제8호까지</u> ----- ----- -----.</p>	<p>무형문화재 관련 조문 삭제로 인용 조문 수정</p>
<p><u>제34조</u>(지정문화재의 공개 등) ①</p>	<p><u>제32조</u>(지정문화재의 공개 등) ①</p>	

현행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 ⑤ (생략)	~ ⑤ (현행과 같음)	
<p><u>제35조</u>(관람료의 징수) ① 지정문화재 등의 <u>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u>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문화재의 <u>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u> 정한다.</p>	<p><u>제33조</u>(관람료의 징수) ① ----- ----- <u>소유자 또는 관리단체</u>는 ----- ----- ----- -----.</p> <p>② ----- ----- <u>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u> -----.</p>	<p>무형문화재 관련사항 삭제</p> <p>무형문화재 관련사항 삭제</p>
<p><u>제36조</u>(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여능 공개) (생략)</p>	<삭제>	무형문화재 관련 조문 삭제
<p><u>제37조</u> 삭제 <2014.3.20.></p>	<삭제>	조 번호 삭제
<p><u>제38조</u> 삭제 <2014.3.20.></p>	<삭제>	조 번호 삭제
<p><u>제39조</u>(시 소유 문화재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 ② (생략)</p> <p>1. ~ 2. (생략)</p> <p>③ (생략)</p> <p>1. ~ 3. (생략)</p> <p>4. <u>기타</u> 공익목적의 행사</p> <p>④ ~ ⑤ (생략)</p>	<p><u>제34조</u>(시 소유 문화재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 ②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u> -----</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표현 수정
<p><u>제40조</u>(손해배상 등) ① ~ ② (생략)</p>	<p><u>제35조</u>(손해배상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u>제41조</u>(시 소유 문화재의 운영위탁) ① (생략)</p> <p>1. ~ 2.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할 수 있는 시 소유 문화재는 별표 2와 같다.</p> <p>③ (생략)</p>	<p><u>제36조</u>(시 소유 문화재의 운영위탁) ① (현행과 같음)</p> <p><삭제></p> <p>② (현행과 같음)</p>	위임·위탁시설 명사항 삭제(별표2도 함께 삭제)
<p><u>제42조</u>(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p>	<p><u>제37조</u>(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p>	

현행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p>1. ~ 2. (생략)</p> <p><u>3. 지정문화재 중 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의 인정과 해제</u></p> <p><u>4. ~ 11.(생략)</u></p> <p>② ~ ④ (생략)</p> <p>1. ~ 3. (생략)</p> <p>⑤ (생략)</p> <p>1. 위원회의 위원, <u>전문위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u>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2. (생략)</p> <p><u>3.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 등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u>4. (생략)</u></p>	<p>1. ~2.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u>3. ~ 10.</u>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u>1. ~ 3. (현행과 같음)</u></p> <p>⑤ (현행과 같음)</p> <p>1. ----- <u>전문위원 등의</u> ----- ----- ----- ----- -----</p> <p>2.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u>3. (현행과 같음)</u></p>	<p>무형문화재 관련 호 삭제</p> <p>무형문화재 관련사항 삭제</p> <p>무형문화재 관련사항 삭제</p>
<p><u>제43조</u>(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u>50명 이내의 위원으로</u> 구성한다.</p> <p>② ~ ③ (생략)</p> <p>1. ~ 3. (생략)</p> <p>④ (생략)</p>	<p><u>제38조</u>(위원회의 구성) ① ----- <u>40명 이내의 위원으로</u>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무형문화재위원 별도구성으로 인원조정</p>
<p><u>제44조</u>(위원장의 직무) ① ~ ③ (생략)</p>	<p><u>제39조</u>(위원장의 직무)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제45조</u>(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u>50명 이내의</u>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p>	<p><u>제40조</u>(전문위원) ① -----<u>40명 이내의</u> -----.</p>	<p>무형문화재 위원 별도구성으로 인원조정</p>

현행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 (해축) (생략)	제41조 (해축) (현행과 같음)	
제47조 (회의) ① ~ ④ (생략)	제42조 (회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48조 (수당 등 지급)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사 또는 심의에 참여한 위원, 전문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u>범위 안에서</u>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 (수당 등 지급) ----- ----- ----- <u>범위에서</u> ----- -----.	표현 수정
제49조 (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매장문화재의 보호) ① ~ ② (생략)	제44조 (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매장문화재의 보호)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① (생략) ②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라목의 건설공사라 함은 <u>“서울특별시외의 퇴계로·다산로·왕산로·율곡로·사직로·의주로 및 그 주변지역으로서 별지 제5호서식이 정하는 서울성곽 내부 구역에서</u> 시행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45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4조제1항제4호다목의 ----- - <u>별지 제5호서식이 정하는 한양도성(내부 구역 및 사적 비지정 구간 포함)과 한양도성의 보호구역 외곽 100m 이내 지역에서</u> ----- -----.	2015. 8.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제51조 (지표조사에 따른 보존조치의 명령) ① 시장은 제50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인가·허가기관의 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 (지표조사에 따른 보존조치의 명령) ① ----- 제45조제2항에 ----- ----- ----- 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u>따라</u> ----- -----.	2015. 8.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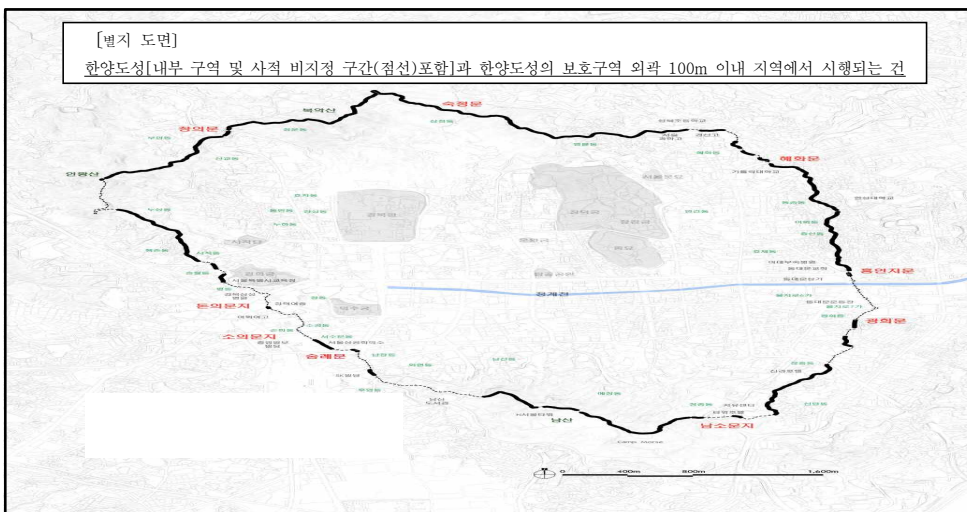
현행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p>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u>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의 인가·허가기관의 장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p>③ (생략)</p>	<p>② ----- ----- 「<u>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u>」 제10조를 준수하여 <u>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 --- 시장 및 건설공사의 인가·허가기관의 장에게 -----.</u></p> <p>③ (현행과 같음)</p>	
<p><u>제52조</u>(매장문화재의 기록·작성 등) 시장은 확인된 매장문화재의 기록을 작성·유지하고, 그 포장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방안을 <u>강구하여야</u> 한다.</p>	<p><u>제47조</u>(매장문화재의 기록·작성 등) ----- ----- ----- ----- -- <u>마련하여야</u> -----.</p>	표현 수정
<p><u>제53조</u>(매장문화재의 공고) 시장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로 문화재가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u>그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u> 시 홈페이지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p>	<p><u>제48조</u>(매장문화재의 공고)----- ----- ----- ----- ----- <u>그 사실을</u> ----- -----.</p>	표현 수정
<p><u>제54조</u>(문화재수리 등의 기본원칙) (생략)</p>	<p><u>제49조</u>(문화재수리 등의 기본원칙) (현행과 같음)</p>	
<p><u>제55조</u>(문화재수리 등의 시행계획 수립) ① ~ ② (생략)</p>	<p><u>제50조</u>(문화재수리 등의 시행계획 수립) ① ~ ② (현행과 같음)</p>	
<p><u>제56조</u>(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등록) ① ~ ⑦ (생략)</p>	<p><u>제51조</u>(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등록) ① ~ ⑦ (현행과 같음)</p>	
<p><u>제57조</u>(문화재수리업의 양도 등) ① ~ ④ (생략)</p>	<p><u>제52조</u>(문화재수리업의 양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u>제58조</u>(문화재수리업의 상속) ①</p>	<p><u>제53조</u>(문화재수리업의 상속) ① ~</p>	

현행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9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도급의 원칙) ① ~ ② (생략)	제54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도급의 원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 (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 ① ~ ② (생략)	제55조 (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 (문화재수리 현장의 점검 등) ① ~ ② (생략)	제56조 (문화재수리 현장의 점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 (문화재수리 현황의 검사 등) ① ~ ③ (생략)	제57조 (문화재수리 현황의 검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63조 (시정명령 등) (생략)	제58조 (시정명령 등) (현행과 같음)	
제64조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등록 취소 등)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등록취소 등에 대하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준용한다.	<삭제>	법무담당관 자치법규 정비의견 반영
제65조 (수수료) (생략)	제59조 (수수료) (현행과 같음)	
제66조 (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등) ① ~ ⑤ (생략)	제60조 (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67조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 ② (생략)	제61조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68조 (준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법무담당관 자치법규 정비의견 반영
제69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 ~ ② (생략).	제62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 ~ ② (현행과 같음).	

현행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p><u>제70조</u>(사무의 위임) (생략)</p> <p>1. ~ 2. (생략)</p> <p>3. <u>제26조에</u> 따른 지정문화재 등의 <u>관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 명령 및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u></p> <p>4. 제24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수리</p> <p>5. (생략)</p>	<p><u>제63조</u>(사무의 위임)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제24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u> 규정에 따른 신고의 수리</p> <p>4. <u>제25조에</u> 따른 지정문화재 등의 <u>관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u></p> <p>5. (현행과 같음)</p>	<p>3호, 4호 순서 변경</p> <p>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무위임 범위 확대</p>
<p><u>제71조</u>(문화재 방재의 날) ① ~ ② (생략)</p>	<p><u>제64조</u>(문화재 방재의 날) ① ~ ② (현행과 같음)</p>	
<p><u>제72조</u>(표창) (생략)</p> <p>1. (생략)</p> <p>2. <u>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명예 보유자 외의 자로서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u></p> <p>3.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관리, 보호 또는 공개할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 보호 또는 <u>공개서</u> 다른 자의 모범이 된 자</p> <p>4. (생략)</p> <p>5. (생략)</p>	<p><u>제65조</u>(표창)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2. ----- ----- ----- ----- <u>공개로</u> ----- -----</p> <p>3.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무형문화재 관련사항 삭제</p> <p>오타 정정</p>
<p><u>제73조</u>(과태료) ① (생략)</p> <p>② 시장은 거짓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u>제39조에</u> 따른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자에게는 내야 할 사용료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p>	<p><u>제66조</u>(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제34조에</u> ----- ----- -----</p>	<p>무형문화재 관련 조항 삭제로 인용 조문 수정</p>
<p><u>제74조</u>(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이 <u>제73조에</u> 따른 과태료를</p>	<p><u>제67조</u>(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 <u>제66조에</u> -----</p>	<p>무형문화재 관련 조</p>

현행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② ~ ③ (생략)	----- -----.. ② ~ ③ (현행과 같음)	항 삭제로 인용 조문 수정
부칙 <u>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부칙 <u>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u>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현행과 같음)	무형문화재관련 조례의 시행일 동일하게 정함.
<신설>	<u>(별표 1)</u>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제7조제6항 관련)	법 제14조 체계에 따른 정비
<u>(별표 1) (생략)</u>	<u>(별표 2) (현행과 같음)</u>	
<u>(별표 2) (생략)</u>	<삭제>	현행 조례 제41조제2항 삭제에 따른 삭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생략)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현행과 같음)	
<u>[별지 제5호서식]</u> (생략)	<u>[별지 제5호서식]</u> 하단 참조	2015. 8.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안 별지 제5호서식]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07
----------	------

제출년월일 : 2016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에 따른 조문 정비와 상위법령 개정사항, 그 밖에 문화재 보존·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정문화재의 도난방지장치 및 금연구역 관련 규정 신설함(안 제7조)
- 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한 상위법 내용 반영함(안 제19조, 안 제25조)
- 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반영함(안 제45조, 안 제4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별도 붙임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일부반영)

여성정책담당관 검토결과 : 개선의견	반영여부 : 【일부반영】
제3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u>시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u>	제3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u>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u>

(5)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 갈등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6. 5. 26. ~ 6. 15.) 결과 :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별도 붙임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별도 붙임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별도 붙임

(5) 갈등영향분석평가 결과 : 별도 붙임

※ 작성자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재정책팀 황향선 (☎ 2133-2613)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향토문화와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정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및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를 말한다.
2. "문화재자료"란 법 제2조제2항제3호 및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장이 향토 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를 말한다.

3.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보호물"이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5.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6.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7. "시외소재문화재"란 시외로 반출되어 현재 서울특별시 밖에 소재하는 문화재를 말한다.
-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장 문화재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제3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문화재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④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문화재 보호 단체의 지원 및 육성) 시장은 문화재의 보호, 보존, 보급 및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3장 문화재 보호의 기반 조성

제5조(문화재 기초조사) ① 시장은 문화재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재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하거나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조사·발굴과 관련된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문화재 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조사 자료와 그 밖의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민이 문화재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재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재정보체계의 구축 범위·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① 시장은 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이하 "지정문화재 등"이라 한다)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화재대응 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를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지침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여야 하며, 화재대응을 위하여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 등의 화재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난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지정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정문화재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2. 도난방지장치는 모니터링, 호환성 및 유지·관리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것
3. 도난방지장치의 설치 장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감시가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도록 설치할 것
4. 도난방지장치 관리자는 도난방지장치가 잘 작동되도록 관리할 것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3. 지정문화재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
 4. 기념물중 나무, 풀 또는 꽃 등이 있는 지역
- ⑥ 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 ⑦ 누구든지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
 2. 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 설치

제4장 문화재의 지정

제8조(지정문화재) ① 시장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를 제3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다.

1. 유형문화재 :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유형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2. 기념물 :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기념물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3. 민속문화재 :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민속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제9조(문화재자료)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자료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다.

제10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할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의 사항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 시장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정하면 그 취지를 서울특별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2조(지정서 등의 교부)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를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줄 수 있다.

제13조(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은 그 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시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4조(지정 해제) ①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가 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지정문화재 등으로 지정된 문화재가 법 제23조,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날부터 지정문화재 등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3조를 준용

한다.

④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소유자가 제3항과 제11조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가지정)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지정 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지정문화재로 가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지정의 효력은 가지정된 문화재(이하 "가지정문화재"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지정은 가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관하여는 제11조와 제12조를 준용하되,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보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제16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의 지정)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가목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제5장 문화재의 관리와 보호

제17조(소유자 관리의 원칙) ①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으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②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18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시장은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 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자치구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해당 지정문화재 등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유에 속하는 시지정문화재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관리단체는 자치구가 된다. 다만, 문화재가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가 관리단체가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있으면 그 의견을 들어 이를 고려하여야 하며, 지정하려는 관리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시보에 고시하고,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 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관리단체가 지정문화재 등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해당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시 또는 자치구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9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정문화재는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한다.

2. 지정문화재 등은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지정문화재 등 중 시장이 지정한 동산문화재, 일반묘역, 일반묘역 안의 신도비와 보호구역지정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지정문화재 등은 제외한다.

②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행정기관"이라 한다)이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 등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 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높이가 별표 2의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 규모, 높이, 모양, 재질, 색상 등이 문화재와 조화되는지 여부
3. 문화재 주변의 경관 및 조망의 훼손여부
4. 시공 중 또는 완성 후 사용 중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오수, 폐수, 유해가스,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을 방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5.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수반 여부

6. 수계·수량 변경 또는 수질 오염 여부
7. 고도경관 또는 역사, 문화, 자연환경 등 저해여부
8. 매장문화재의 유존 여부
9. 그 밖에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④ 행정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과, 지정문화재 등은 시장과 협의를 거쳐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별표 2의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제3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토 결과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 경계에 직접 접해 있는 필지로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다만, 하나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지역범위 내외를 걸쳐있는 경우는 문화재청장 또는 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건설공사에 대한 인가·허가를 행하는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공사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면 제4항을 준용한다.

제20조(허가사항) 지정문화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

하는 행위

2. 지정문화재 등을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3. 지정문화재 등(보호물, 보호구역과 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동물·식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제21조(허가기준)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문화재기본계획과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들어맞을 것

제22조(허가사항의 취소) ①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23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동물 치료소는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구청장 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지정한다.

1.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
2.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직원으로 두고 있는 시의 축산관련 기관
3.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는 동물보호단체

② 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를 추천하려는 구청장 또는 관리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자를 동물치료소로 지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적고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재교부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못 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⑤ 시장은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동물을 죽게 하거나 불구가 되게 한 경우
4.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치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동물치료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6.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신고사항) 지정문화재 등(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經緯)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규(新舊) 소유자가 각각 연서(連署)로 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에 변경이 있는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
4. 지정문화재 등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地番), 지목(地目), 면적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5.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
6. 지정문화재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20조제1호에 따라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8. 제20조제3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를 현상변경(現象變更)하거나 그 밖의 행위에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
9. 지정문화재등을 시 관할 행정구역 밖으로 반출하거나 다시 반입한 경우

제25조(행정명령 및 조치) ① 시장은 지정문화재 등(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다음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지정문화재 등의 관리 상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3.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4. 제20조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5. 제20조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조치

② 시장은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기록의 작성·보존) ① 시장과 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지정문화재 등의 보존·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정문화재 등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지정문화재 등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정기조사) ① 시장은 지정문화재 등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지정문화재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리단체에 대하여 지정문화재 등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 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는 관리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지정문화재 등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지정문화재 등의 지정과 그 해제
2. 지정문화재 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지정문화재 등의 수리 및 복구

4. 지정문화재 등의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제거 및 이전
5. 그 밖에 지정문화재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8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지정문화재 등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및 조사상 필요한 행위범위, 조사 증표 휴대 및 제시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29조(보조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지정문화재 등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지정문화재 등의 관리, 보호, 수리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제26조에 따른 기록의 작성·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지정문화재 등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다.

제30조(경비 부담) 시장은 시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에 대한 관리, 보호 또는 수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31조(준용) 가지정문화재의 관리와 보호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5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2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준용한다.

제6장 문화재의 공개 및 관람료

제32조(지정문화재의 공개 등) ① 지정문화재 등은 제2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정문화재 등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문화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문화재 등의 공개를 제한하면 해당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보에 고시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보에 고시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관람료의 징수) ①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제7장 시 소유 문화재의 운영

제34조(시 소유 문화재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시 소유 문화재를

단순관람 목적이 아닌 촬영 및 장소사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촬영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왜곡하는 내용이 아닐 것
2. 살인·폭력·방화 등 비도덕인 내용이 아닐 것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소사용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로서 당해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거나 역사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당해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행사
2. 글짓기·그림 그리기·서예대회 및 이와 유사한 비영리 교육 또는 문화 행사
3. 정부, 국제기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회의, 전시 등의 행사
4. 그 밖에 공익목적의 행사

④ 제1항에 따라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에 필요한 사항 및 사용료의 금액은 시설사용의 유형 및 사용시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손해배상 등) ① 시장은 시 소유 문화재의 관람자 및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배상 또는 보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 또는 보상액은 시장가격에 따른 실제비용으로 한다.

제36조(시 소유 문화재의 운영위탁) ① 시장은 시 소유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 소

유 문화재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 문화재 보전, 전승 또는 문화예술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 또는 자치구
 2. 시 소유 문화재를 관광자원화하거나 명소(名所)화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자치구
- ② 시 소유 문화재 운영의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장 문화재위원회

제37조(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조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지정문화재 등의 지정과 그 해제
2. 지정문화재 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지정문화재 등의 중요한 수리나 복구의 명령
4. 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또는 시외반출의 허가
5. 지정문화재 등의 환경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 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 제거 또는 이전 등의 명령
6. 등록문화재에 대한 자문
7. 지정문화재 등의 보존, 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시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 대한 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명령
9. 표석의 신설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문화재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 종류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④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주요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⑤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등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개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40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전문사항의 자료수집, 조사 및 연구와 계획을 입안하며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1조(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매매업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이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경우

제42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경우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사 또는 심의에 참여한 위원, 전문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

제44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매장문화재의 보호) ① 시장, 구청장 등 개발사업을 계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45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다목의 건설공사라 함은 별지 제5호서식이 정하는 한양도성(내부 구역 및 사적 비지정 구간 포함)과 한양도성의 보호구역 외곽 100m 이내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46조(지표조사에 따른 보존조치의 명령) ① 시장은 제45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인가·허가기관의 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준수하여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건설공사의 인가·허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과 그 절차에 관하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매장문화재의 기록·작성 등) 시장은 확인된 매장문화재의 기록을 작성·유지하고, 그 포장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8조(매장문화재의 공고) 시장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로 문화재가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장 문화재수리 등

제49조(문화재수리 등의 기본원칙)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문화재수리 등"이라 한다)는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와 그 주변 경관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0조(문화재수리 등의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후 1년 이내에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구청장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등록) 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관할 내에 두고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이 규정한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등을 등록한 자는 등록 사항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등을 등록한 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폐업신고를 받으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 변경신고, 폐업신고를 받으면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을 하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⑦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와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문화재수리업의 양도 등)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법인인 문화재수리업자가 합병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의 양도신고가 있는 때에는 문화재수리업을 양수한 자는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한 자의 문화재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의 합병신고가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

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문화재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등록 요건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문화재수리업의 상속) ① 문화재수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상속인은 문화재수리업을 상속받으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상속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4조(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도급의 원칙)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당사자는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내용이 적힌 문화재수리 도급 대장, 실측 설계 도급 대장 또는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5조(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완료하면 60일 이내에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문화재수리 현장의 점검 등) ① 시장은 문화재수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현장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문화재수리 등을 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 등,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감리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재가 원형대로 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고증, 양식, 문화재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현장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57조(문화재수리 현황의 검사 등) ① 시장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수리업자 등에게 그 업무 및 문화재수리 현황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와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문화재수리 등의 발주자·문화재감리원 등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자에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58조(시정명령 등) 시장은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5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제60조(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등) ① 문화재수리업자와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기술수준 및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또는 실측설계를 발주한 시장은 그 문화재수리 또는 실측설계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대하여는 1년 동안 우수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발주자
2.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
3. 지정일 및 유효기간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우수업자가 지정기간 동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감경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재수리 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1조(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시장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부과기준에 따라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제11장 보 칙

제6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 등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 소유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행하는 명령·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전 소유자(前所有者)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8조에 따라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관리단체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전속(專屬)하는 권리·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20조제1호에 따른 허가사항
2. 제20조제2호에 따른 지정문화재 등의 탁본·영인 또는 촬영의 허가
3. 제24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수리
4. 제25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등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64조(문화재 방재의 날) ① 시장은 문화재 방재의 날 취지에 맞도록 문화재에 대한 안전점검, 방재훈련 등의 사업 및 행사를 실시한다.

② 문화재 방재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5조(표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

1. 관리·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멸실, 유실, 도난, 훼손을 방지하는데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2.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관리, 보호 또는 공개할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 보호 또는 공개로 다른 자의 모범이 된 자
3.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4. 문화재 보존 관련 전람회와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제66조(과태료) ① 시장이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자에게는 내야 할 사용료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이 제6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③ 시장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항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총액은 법 제103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별표 1]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제7조제6항 관련)

1.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지

가.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1)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 또는 지역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세부 규격 등은 '서울시 문화재 금연안내표지판 표준형 디자인 및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2)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작하여 설치 및 부착하여야 한다.

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경우

1) 금연구역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같다.

2) 흡연구역

흡연구역에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2. 흡연구역(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시설기준 및 설치방법

가.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2]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제19조 관련)

적용범위 및 대상문화재		높이 기준	비 고 (문화재 높이)
4대문 안의 국가지정문화재	숭례문, 흥인지문, 우정총국,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 수궁, 종묘, 경희궁, 운현궁, 종묘, 서울 문묘, 탑골공원, 서 울사직단, 서울사직 단정문, 정동교회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지표면에서 문 화재높이 기준하여 양각 27°선 이 내	· 숭례문 : 19m · 흥인지문 : 20m · 우정총국 : 6.5m ·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 3.2m · 경희궁 : 12m · 운현궁 : 7m · 서울문묘 : 7m · 탑골공원 : 12m · 서울사직단 및 서울사직단 정문 : 6m · 정동교회 : 2m(답장기준)
	기타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지표(보호구역이 지 정되지 않은 문화재는 외곽 경계) 에서 높이 3.6m를 기준 하여 양각 27° 선 이내	· 서울성곽은 4대문 내·외 구분없이 적용
4대문 밖의 국가지정문화재 및 서울시지정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 지 않은 문화재는 외곽경계)지표에 서 7.5m높이를 기준하여 양각 27° 선 이내	

※ 양각 27° 선이란 보호구역 경계지점에서 건축행위를 할 예정인 건축물까지의 거리와 건축물 높이가 2:1에 해당 하는 선을 말한다.
 ※ 건축물의 일부가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의 적용대상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전체에 대하여 높이 기준 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				처리기간
				30일
추천인	①기관명		②대표자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전자메일	
동물치료소 추천대상	⑥기관명		⑦주소	
	⑧대표자		⑨생년월일	
	⑩전화번호		⑪전자메일	
	⑫수의사 면허번호		⑬수의사 면허일자	
<p>「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추천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300px;">구 청 장 [인]</p> <p style="margin-left: 150px;">추천인</p> <p style="margin-left: 250px;">국가지정문화재관리단체의 장 [인]</p> <p>서울특별시장 귀하</p>				
※ 구비서류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의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1. 기 관 명 :

2. 대 표 자 :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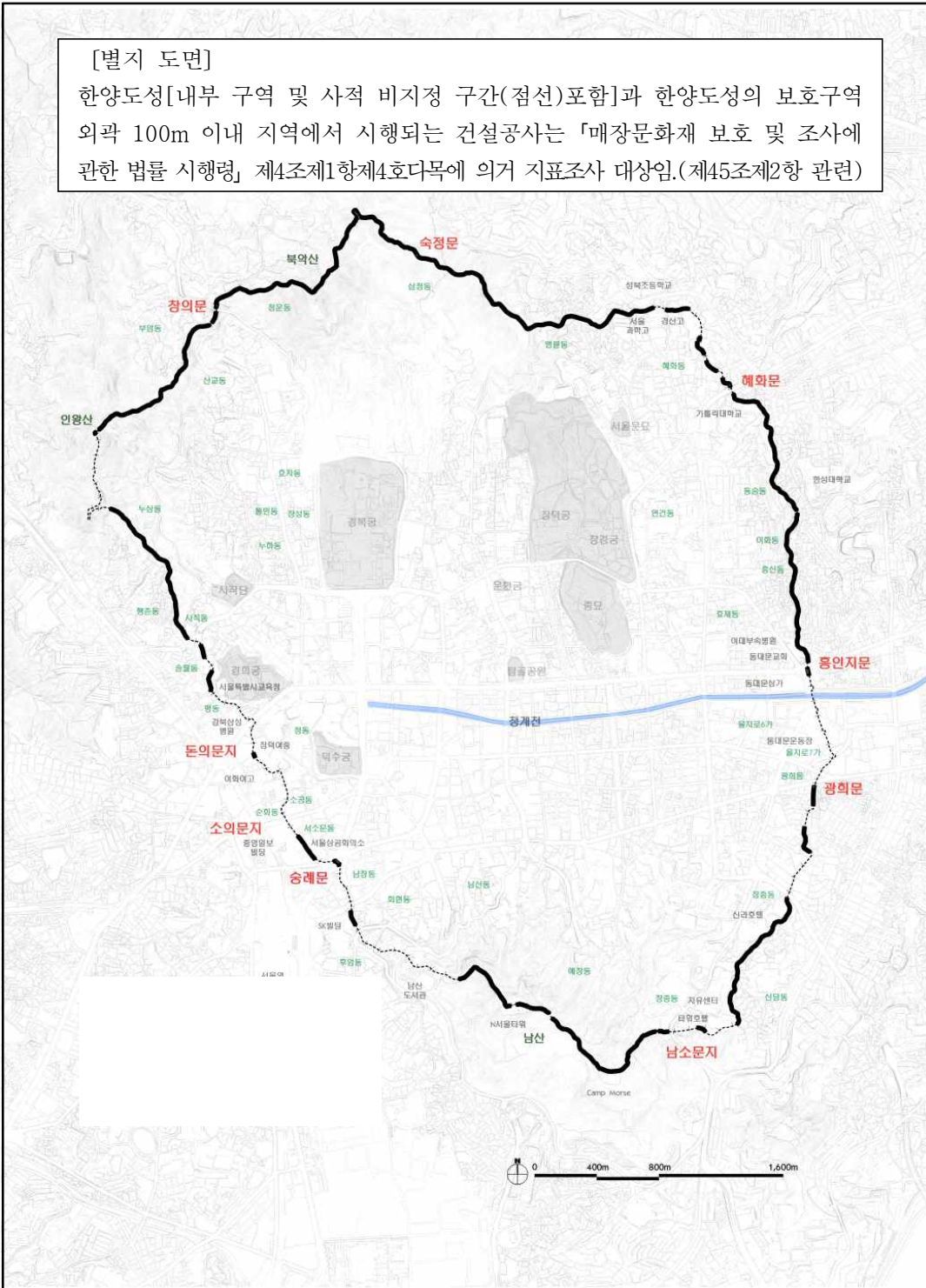
①교부 번호	②교부 일자	③기관명	④지정일	대 표 자			
				⑤성 명	⑥생년월일	⑦수 의 사 면허번호	⑧면허일자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①지정번호				②지정일자	
신청기관	③기관명			④주소	
	⑤대표자			⑥생년월일	
	⑦수의사 면허번호			⑧수의사 면허일자	
재교부사유	<input type="checkbox"/>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input type="checkbox"/>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못 쓰게 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p>「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제23조제4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재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년 월 일</p> <p> 신청인(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p> <p>서울특별시 장 귀하</p>					
※ 구비서류 1.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못 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별지 도면]

한양도성[내부 구역 및 사적 비지정 구간(점선)포함]과 한양도성의 보호구역
 외곽 100m 이내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의거 지표조사 대상임.(제45조제2항 관련)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에 따른 조문 정비와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며, 신설되는 조항은 관련법에 따라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별도의 추가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음

4. 작성자: 역사문화재과 행정6급 황향선